

■ 규정명 :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■ 규정번호 : HC-조직-6

■ 주관부서 : 지원팀

■ 제정일 : 2001. 04. 18

■ 최종개정일 : 2012.03.23

■ 개정번호 : 3

■ 목차

- 1. 총 칙
- 2. 구 성
- 3. 회 의
- 부 칙

1. 총칙

1.1 목적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3 권한

- 1.3.1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.
- 1.3.2 위원회는 1.3.1의 사외이사 후보자의 수락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.
- 1.3.3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상법 제546조의6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1.3.4 위원회는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수가 본인의 거절 등의 사유로 선임예정인 사외이사 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에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2. 구성

2.1 구 성

- 2.1.1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2.1.2 위원회는 4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2.1.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2.1.4 위원이 사임,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2.1.2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2.2 위원장

- 2.2.1 위원회는 3.3.1 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2.2.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2.2.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회 의

3.1 소집권자

- 3.1.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2.2.3 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1.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3.2 소집절차

- 3.2.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모사전송기(FAX),유선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3.2.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3.2.1 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3.3 결의방법

3.3.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3.3.2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의결권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3.4 부의 사항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사외이사후보자의 결정
- (2) 기타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3.5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3.6 의사록

3.6.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3.6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3.7 보 고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8 간사

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3.9 규정의 개폐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4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 3.3,1에 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